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01
----------	-------

발의연월일 : 2026. 1. 21.

발 의 자 : 허성무 · 박선원 · 송재봉
김문수 · 양문석 · 이언주
채현일 · 문정복 · 이재관
손명수 · 최혁진 · 허종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 조합원의 요건을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어업인의 범위를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한 후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조합원 자격 요건을 상실하였음에도,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한 채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조합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조합 내부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형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지구별수협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장은 조

합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종류를 확대하고 사회적으로 중대
한 범죄로 인식되는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결격사유에 추
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기적으로 조합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자격 미달 조합원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한편, 임원의 결격사유에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수산업협동조
합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제8호의2 중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의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조합원의 자격) ① · ② (생략) <u><신설></u>	제20조(조합원의 자격)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구별수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8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 -----
<u><신설></u>	8의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9. ~ 13. (생략) ② · ③ (생략)	<u>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u> 9. ~ 1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